

영등포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10.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호로 201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구민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고 기록물 관리 인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제2조 및 별표 3)

- 정원의 총수 : 1,30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75명
- 일반직 총계 : 1,296명
 - 6급이하 소계 : 1,225명

※ 인력 조정 현황

구 분	계	별정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비 고
확충인원	1명	1명	-	
감소인원	1명	-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정 5급 3호봉 기준 43,208천원

구 분	금 액
3호봉(본봉)	2,263,400원 × 12개월 = 27,160,800
직급보조비	250,000원 × 12개월 = 3,000,000
시간외근무수당	681,000원 × 12개월 = 8,172,000
정액급식비	130,000원 × 12개월 = 1,560,000
대민활동수당	50,000원 × 12개월 = 600,000
명절수당	2,263,400원 × 120% = 2,716,080
총계	43,208,880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록물 관리·보존 업무 관련 연구인력을 현원에 맞게 임기제 정원으로 대체하여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으로 변동이 없고,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의 5급 상당 별정직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연구사 정원을 1명 감하는 내용임.

- 이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우리구의 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영등포구 기준인건비 1,024억 3,677만원 대비 98.7%인 1,011억 2,900만 8천원으로, 1.2%에 해당하는 13억 776만 2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붙임1 ‘기준인건비 현황 및 2014년도 세출총괄표’ 참조】**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비서실 업무의 성질 · 난이도 · 책임도 ·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원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의 비서인력 정원현황을 보면 총 9개구가 5급 정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강남, 송파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제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의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였으며, 2개구(은평구, 서초구)는 이후에 정원을 책정하였음.

【붙임 2 ‘서울시 타 자치구 비서인력 정원현황’ 참조】

【별 첨1】

기준인건비 현황 및 2014년도 세출총괄표

□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 근 거 : 201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 현 황

▷ 안전행정부 통보 기준

- 인건비 : 102,436,770천원, - 공무원수 : 1,311명

▷ 우리구 인건비 및 정원 현황(2014.10)

- 인건비 : 101,129,008천원, - 공무원수 : 1,302명

□ 2014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제1차 추경 예산서 55p 참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01,129,008
101 인건비	82,212,764
101-01 보수	65,616,927
101-02 기타직보수	5,083,06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512,777
204 직무수행경비	2,285,333
204-02 직급보조비	2,285,333
303 포상금	3,713,475
303-02 성과상여금	3,713,475
304 연금부담금등	12,917,436
304-01 연금부담금	10,750,483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166,953

서울시 자치구별 비서직렬 정원 현황(2014. 10. 6기준)

연	자치구	직원수	인구수	계	구청			구의회			비고	
					소계	5급	6급	7급이하	소계	6급		7급이하
1	영등포구	1,302	385,654	4	2	-	1	1	2	-	2	
2	종로구	1,175	158,821	3	1	-	1	-	2	-	2	
3	중 구	1,211	129,430	5	3	1	1	1	2	-	2	중심구
4	용산구	1,209	238,523	4	3	-	1	2	1	-	1	
5	성동구	1,199	299,328	4	2	-	1	1	2	-	2	
6	광진구	1,144	366,939	4	2	-	1	1	2	-	2	
7	동대문구	1,257	362,413	4	2	-	1	1	2	-	2	
8	중랑구	1,214	418,158	4	2	-	1	1	2	-	2	
9	성북구	1,391	473,359	4	2	-	1	1	2	-	2	
10	강북구	1,153	336,889	4	2	-	1	1	2	-	2	
11	도봉구	1,103	356,599	4	2	-	1	1	2	-	2	
12	노원구	1,369	586,431	8	6	1	2	3	2	-	2)
13	은평구	1,249	501,371	6	4	1	1	2	2	-	2	2014.9.18 구청: 5급1△ 의회: 9급1▽
14	서대문구	1,197	313,538	5	3	-	1	2	2	-	2	
15	마포구	1,301	381,231	3	2	-	1	1	1	-	1	
16	양천구	1,225	490,066	5	3	1	1	1	2	-	2	
17	강서구	1,372	570,924	4	3	1	1	1	1	-	1	
18	구로구	1,199	427,854	4	2	-	1	1	2	-	2	
19	금천구	1,064	239,823	3	1	-	1	-	2	-	2	
20	동작구	1,235	410,969	4	3	-	1	2	1	-	1	
21	관악구	1,326	516,748	5	3	1	1	1	2	1	1	
22	서초구	1,315	443,940	6	5	1	-	4	1	1	-	
23	강남구	1,432	568,867	4	3	1	1	1	1	-	1	
24	송파구	1,424	670,543	5	3	1	1	1	2	-	2	
25	강동구	1,196	480,805	6	4	-	1	3	2	-	2	

※ : 총액인건비 시행(2008년도)이전 행정안전부의 정원책정기준(인구수 50만 이상)에 따라 5급 정원을 규정한 자치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